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6. 9(금) 10:00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동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동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53호
- 나. 제 출 자 : 이인식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5. 31.
- 라. 회부일자 : 2023. 5. 31.

2. 제안이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바,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수요를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 나.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지원사업 (안 제4조)
- 다.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5조)
- 라. 사무의 위탁 및 예산지원 (안 제6조 및 제7조)
- 마.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
 -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3)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3. 6. 1. ~ 2023. 6. 7.

5.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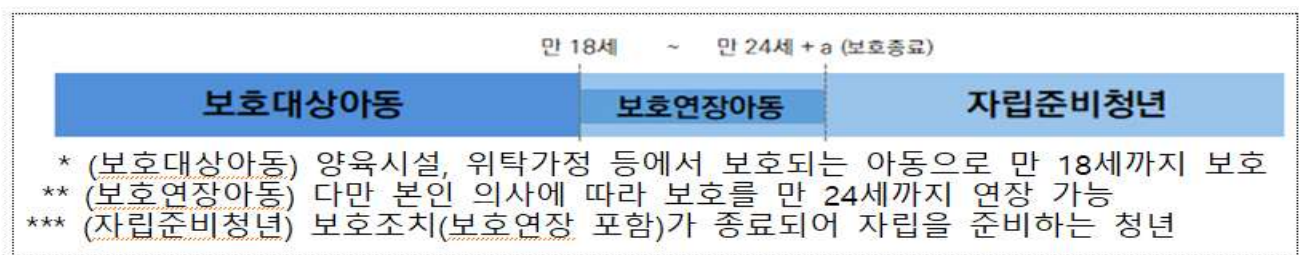
가. 개정 이유

본 안건은 금천구 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였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2)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지원사업 (안 제4조)
 - 자립 정착금, 주거 지원사업 등 자립 자활사업을 명시함
- 3)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5조)
- 4) 사무의 위탁 및 예산지원 (안 제6조 및 제7조)
- 5)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다. 검토의견



-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지원의 대상으로, 그동안 18세 이상의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으로 지칭되어 왔으나, 정부가 이들을 보호와 지원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공식화하였음.
-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수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금천구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본 개정안의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타 지자체 제·개정 현황

- 서울시 : 서울시 및 18개 자치구

- 자립준비청년 명칭 표기 : 서울시 및 7개 자치구(강남, 관악, 구로, 노원, 도봉, 성동, 은평)

※ 그 외 11개 자치구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조례 등으로 운영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 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전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

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2. 4. 21.] [법률 제18101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